## 수강료 반환기준 (제10조 및 제11조 관련)

〈순천시 생활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〉

구 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 환 금 액
1.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수업을 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2.제1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		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3. 제11조 제1항 제5호의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	수업시작 전	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	총수업시간의 1/3 이 지나기 전	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	총수업시간의 1/2 이 지나기 전	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	총수업시간의 1/2 이 지나간 후	반환하지 아니함
비고	반환금액의 산정은 업시간을 기준으로	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 한다.